

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설명서

소비자보호검토필 제 24-0377호 (심의일 : 2024.03.21)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중개형 ISA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중개형 ISA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
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란?

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, 펀드, 파생결합증권, 채권, RP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며 비과세,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.

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유형

ISA는 중개형, 일임형, 신탁형으로 구분되며, 세가지 유형 중 한가지만 가입 가능합니다.
이 중 중개형 ISA는 위탁매매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하는 계좌입니다.

<유형별 ISA 비교>

구분	중개형 ISA	일임형 ISA	신탁형 ISA
계약형태	위탁매매 계약	일임계약	신탁계약
투자방법	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택	금융회사가 제시한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일임 운용	1:1 계약 체결 후 고객의 운용지시대로 운용
투자가능상품	상장주식, 펀드, ETF, ELS, 채권, RP	펀드, ETF, ELS, RP	펀드, ETF, ELS, RP, 예금

■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내용

구분	내용
가입대상	만 19세 이상 거주자(단, 15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) ※직전 3년간 1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불가
투자가능 상품	상장주식, 펀드, ETF/ETN, ELS, 채권, RP ※ISA 유형(중개형, 일임형, 신탁형)중 중개형만 상장주식 투자 가능
계약기간	3년 이상(계약기간 연장 및 재가입 가능) ※의무가입기간 : 3년
납입한도	연간 2천만원, 최대 1억원(납입한도 이월 가능)
세제혜택	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(단,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, 종합소득 3,800만원 이하 가입자 및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) ※200만원(400만원) 초과 순소득 : 9.9% 분리과세
손익통산	투자기간 ISA계좌에서 발생한 순손익(과세대상이익-손실)에 대한 세금만 납부 ※중개형 ISA의 주식 손실에 대해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 가능
중도인출	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인출 가능 ※인출 금액만큼 한도 재생성 되지 않음

<가입 유형 및 유형별 필요 서류>

구분	만 19세 이상 거주자		만 15세~19세 미만 거주자		농어민
	일반형	서민형	일반형	서민형	
대상	누구나 가능	근로소득5천만원 종합소득3,800만원이하	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	근로소득5천만원 종합소득3,800만원이하	종합소득 3,800만원 이하
비과세 한도	200만원	400만원	200만원	400만원	400만원
가입 서류	실명확인증	소득확인증명서	소득확인증명서		농어업확인서+ 소득확인증명서

- *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시(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內 ‘민원증명’ 메뉴) 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’으로 발급
- *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
- * 서민형 가입 후 국세청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을 경우, 일반형으로 전환됩니다.

■ 투자위험 및 유의사항

중도인출	-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인출 가능하며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. ※인출 금액만큼 한도 재생성 되지 않음
중도해지	- 의무가입기간(3년) 이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(특별해지 사유 제외)하는 경우 가입기간 동안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※특별해지사유 :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, 퇴직, 폐업,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,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·파산 등
만기해지	- 만기연장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, 계좌내 모든 금융상품을 즉시(만기일 경과 후 30일 이내, 결제 기준) 환매·매도 하여야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 - 계약기간 만료 후 일부 금융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, 해당 금융상품은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에서 제외(일반과세 적용)됩니다.
만기연장	- 만기일 3개월 전부터 계약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. - 만기 연장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기존 만기일 도래 시점부터 산정됩니다. ※기존 서민형 가입자가 만기 연장 시 일반형 대상자로 변경되는 경우(국세청 부적격 통보 등), 연장 후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은 2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.
부적격통보	- 국세청장은 가입연도 및 만기연장연도의 다음연도에 가입자격을 확인하고 은행연합회에 부적격자를 통보합니다.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조의 4에3) • 서민형 가입자 대상 여부 : 다음연도 2월말 •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: 다음연도 4월30일 • 만 15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요건 충족 여부 : 다음연도 8월31일 - 부적격통보를 받은 계좌에 대해서는 추가입금 및 매수가 제한되며, 이의신청이 해소된 이후 가입자격 부적격이 최종 확정되면 세제혜택의 소멸 혹은 추징, 계좌는 해지하여야 합니다. ※서민형 가입 후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통보를 받을 경우, 일반형으로 전환됩니다.

투자자 유의사항	- 중개형 ISA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. -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-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. - 이 계좌는 자본시장법 제 72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됩니다. -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권리 공매도 불가합니다. -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손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. - 중개형 ISA 내 편입된 금융상품 중 관계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에 한하여 청약철회 가능합니다. 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은 제한됩니다. -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-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손익은 ISA내 예금,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 되지 않습니다. ※중개형 ISA 계좌 내 국내 상장주식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손익통산을 허용하여 세제혜택 부여
-------------	---

■ 민원 상담이 빈번한 숙지 필요사항

Q1. 투자원금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 보장이 가능한가요?

- 투자중개업자, 판매인력 및 이들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**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** 따라서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고 투자금액 손실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.

Q2.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?

- ISA계약의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 동안 **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

Q3. ISA 납입한도 및 세제혜택(손익통산, 비과세 및 분리과세)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

- [사례 : ISA 가입기간 5년, 상품A 투자 500만원 이익, 상품B 투자 200만원 손실일 경우]

- 납입한도 : 연간 2,000만원 x 5년 = 1억원 납입 가능
- 세제혜택(손익통산, 비과세 및 분리과세)
 - >상품A(500만원 이익) - 상품B(200만원 손실) = 300만원 순이익(손익통산, 과세기준금액)
 - >과세기준금액 300만원 - 비과세 200만원 = 100만원(비과세 한도 초과분)
 - >100만원 x 분리과세 9.9% = **세금 99,000원**

■ 투자위험등급 : 중개형 ISA 계좌 내 개별거래상품의 위험등급에 따름

<당사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>

구분	매우높은위험	높은위험	다소높은위험	보통위험	낮은위험	매우낮은위험
주식 (ETF·ETN 포함)	투자경고종목, 투자주의종목 투자위험종목, 관리종목 K-OTC K-OTC-BB KONEX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ETN	주식 ETF ETN				
파생결합증권 (사채) ELS, ELB	원화로 거래하는 종목형 원금비보장형 ELS	원화로 거래하는 지수형 원금비보장형 ELS	원화로 거래하는 ELS 중 원금부분지급 형(80% 이상 90% 미만 지급)	원화로 거래하는 ELS 중 원금부분지급 형(90% 이상 지급)	원화로 거래하는 원금지급형 ELB	
파생결합증권 (사채) DLS, DLB		원화로 거래하는 원금비보장형 DLS	원화로 거래하는 DLS 중 원금부분지급 형(80% 이상 90% 미만 지급)	원화로 거래하는 DLS 중 원금부분지급 형(90% 이상 지급)	원화로 거래하는 원금지급형 DLB	
채권	신용등급 (B+ 이하 또는 무등급)	신용등급 (BB+ ~BB-)	신용등급 (BBB+ ~BBB-)	신용등급 (A+ ~A-)	신용등급 (AA-이상)	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정부보증채
RP						RP

[집합투자증권]

- 설정 3년 미만 펀드의 경우 제조회사의 적용기준과 동일하게 편입대상 자산의 상품군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분류

상품군별 위험등급 분류(예시)

등급	분류기준
1 등급 (매우높은위험)	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%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2 등급 (높은위험)	①고위험자산에 8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3 등급 (다소높은위험)	①고위험자산에 8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%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4 등급 (보통위험)	①고위험자산에 5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5 등급 (낮은위험)	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6 등급 (매우낮은위험)	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②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

“고위험자산”은 주식, 상품, REITs, 투기등급채권(BB+ 등급 이하),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 “중위험자산”은 채권(BBB-등급 이상), CP(A3 등급 이상), 담보부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 “저위험자산”은 국공채, 지방채, 회사채(A-등급 이상), CP(A2-등급 이상), 현금성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
 * 자산에 대한 정의는 제조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

- 설정 3년 경과 펀드는 출시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위험등급을 분류

시장위험 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* 사용)

구분	매우높은위험	높은위험	다소높은위험	보통위험	낮은위험	매우낮은위험
97.5% VaR*	50%초과	50%이하	30%이하	20%이하	10%이하	1%이하

*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.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($\sqrt{250}$)를 곱해 산출

- ※고난도펀드의 경우 자산의 상품군 또는 최근 3년간의 일간수익률과 별도로 위험등급은 2등급(높은위험) 이상으로 부여함
- ※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상향하여 부여함
- ※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, 투자대상, 손실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회사에서 별도의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

■ 유동성위험

구분	중도해지불가	중도해지 시 비용발생	중도해지 가능
해당여부		√	

* ISA 계약의 중도해지 시 감면 세액을 추정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* 자세한 내용은 「■투자위험 및 유의사항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* 중개형 ISA 계좌 내 개별거래상품의 유동성위험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기타 유의사항

구분	내용
청약 철회권	[투자성 상품: <u>비금전신탁계약, 고난도펀드, 고난도투자일임계약, 고난도금전신탁계약</u>] ■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 상품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 체결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 *다만,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. *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. [대출성 상품: <u>신용약정, 주식담보대출약정</u>] ■청약 철회가 가능한 대상 상품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서 체결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 *다만,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 할 수 없습니다. *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.
위법계약 해지권	■ [대상 : <u>펀드, WRAP, ISA, 신탁</u>] ■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이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(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내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■회사는 10일 이내에 고객의 해지 요구에 대한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고, 만약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절 사유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. ■고객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습니다. ■고객의 해지 요구권 등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,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.
자료열람 요구권	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자료의 열람(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	• 회사는 금융소비자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를 제출받아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• 회사는 법령,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,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격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-	---

■ 민원·상담·분쟁조정 연락처

-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www.kiwoom.com) 또는 고객센터(1544-90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(<http://www.fcsc.kr>) 또는 대표번호 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